

제 1470 호
1990. 1. 25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
편집인: 공보관 유천수
전화: 731-6111~3
주소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전화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2570 호	서울특별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3
◎ 예 규	
제 520 호	서울특별시개발사업자금관리운용규정중개정규정 3
◎ 공 고	
제 43 호	1990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 3
제 46 호	관인재교부공고 7

(이면계속)

영										
관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● 구 고 시	
제 2 호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..... 7
제 2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 8
제 3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 9
제 4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 9
● 사업소고시	
제 5 호	하천의 점용허가..... 9
● 사 령	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0. 1. 24

서울특별시장 고건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570호

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중 “도시계획국장”을 “주책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예 규

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. 1. 24

서울특별시장 고건 ㉔

●서울특별시예규제520호

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관리운용규정 중 개정

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기금 관리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26조제2항중 “도시계획국장”을 “주책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●서울특별시공고제43호

1990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

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'90년도 제안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0. 1. 23

서울특별시장

1. 목적

-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 향상
- 행정조직의 환경적응력 향상 및 시민편의 증진
-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렬 및 사기양양

2. 제안의 종류

- 자유제안 :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정하여 제출하는 제안
- 직무제안 :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국장(사업소 포함)이 추천한 제안
- 추천제안 : 각구의 제안규칙에 의하여 심사·채택된 제안이거나, 채택 실시 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

3.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대상

- 제안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소속 및 구 소속 공무원(별정직, 고용직 포함)
- 제안자의 수 : 단독제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안내용의 전문성등으로 공동제안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분담내역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에 따라 주제안자,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서를 첨부 공동제안 할 수 있다.

<p>○ 제안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민행정 서비스의 향상방안 · 예산절감, 에너지절약, 세수증대, 행정 능력향상 방안 · 기타, 설비, 장치 등의 발명 또는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· 기타 시정전반에 관한 개선방안(중앙부처, 자치구 소관사항 제외) <p>* 제안제도 관장기관별 제안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부처 :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(법령의 개정사항 포함) · 시 : 자치구사무를 제외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(시장 권한사항) · 구 : 자치구사무에 관한 사항(구청장 권한사항) <p>4. 모집기간 : '90. 1. 1 ~ '90. 8. 31</p> <p>5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</p> <p>○ 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안서 3부(별지1호서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안내용설명서 3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개요, 현황, 현행상문제점, 개선방안, 효과(예산절감시 산출내역포함) 등을 자세히 기술하며 근거자료 첨부 ·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인 경우 설계도, 사진 등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(실물이 있을경우 실물을 제출) <p>* 단, 직무·추천제안인 경우는 직무·추천제안추천서(별지2호서식) 1부 첨부</p> <p>○ 제출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접수처 : 서울특별시청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실(731-6151~3) · 제출방법 : 직접제출 및 문서함 우편이송 제출 <p>*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둘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</p> <p>6.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특전부여(제안규칙 제24조)</p> <p>○ 부상금 지급내역</p>
--	---

장 안 등 급	등 상	은 상	동 상	장 령 상	노 령 상
부 상 금 (1건당)	2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	150만원이상 250만원미만	50만원이상 150만원미만	30만원이상 50만원이상	5만원이상 30만원미만

<p>○ 창안자 전원에 대한 시상표창 및 인사상 특전 부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상 이상 : 특별승진(7급이하) 및 승진시험 우대(6급) · 장려, 노령상 : 특별승급 <p>7.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○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취득 또는 	<p>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○ 일반공정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○ 그 내용이 단순한 주위판기, 경쟁, 비판, 견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.
---	--

* '85~'89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

내역 \ 년도	'85년도	'86년도	'87년도	'88년도	'89년도
접 수	67건	83건	120건	145건	114건
채 택 내 역	동 상 2건	동 상 2건	동 상 2건	동 상 1건	동 상 2건
	장 령 상 1건 노 령 상 4건	장 령 상 2건 노 령 상 4건	장 령 상 3건 노 령 상 7건	장 령 상 4건 노 령 상 4건	장 령 상 2건 노 령 상 5건

<별지 제1호서식>

자유
 지정 제안서

수신 : 서울특별시

제 안 내 용	①제 안 의 분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제도 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기술 분야	②심 사 번호	
	③제 목			
	④개 요			
	⑤현행 상의 근 계 점			
	⑥현 행 과 대 비	현	행	개
효 과	⑦예 산 결 감 액	⑧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액	⑨행정 개선 효 과	

..... 결 취 선

제 안 자	⑩성 명 한 글	⑪주민등록 번호	⑫접수번호
	⑬소 속	⑭직 급	⑮심사번호
	⑯주 소		⑰연락전화 번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 16 조에 의거 자유 지정 제안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제출자 인

- 첨부 : 1. 제안내용 설명서
2. 경비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
3. 참고자료
4. 직무제안추천서 (직무제안 한함)

(2호 서식)

직무·추천제안추천서

서울특별시장 귀하

제안자	소속: 성명:	직급: 연령:
제안자의담당직무		
제안자의공적개요		
직무제안내용		
개요		
창의성		
개선효과		
의견		
<p>위와 같이 직무 추천 제안을 추천합니다.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flex-end; margin-top: 20px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추천기관명</p> <p>직위</p> <p>직인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년 월 일</p> <p>성명</p> <p>실인</p> </div> </div>		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46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인재교부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한강공원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('89. 12. 27 서울특별시 조례 제2537호) 및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설치조례('89. 12. 27 서울특별시 조례 제2540호)에 의거 "서울특별시 안양 하수처리장장" 및 "서울특별시 남지하수처리장장"의 관인을</p>	<p>관인규정 제2조,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,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0. 1. 24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: 1990. 1. 30 2. 관인재교부내역</p>
--	---

인 장	폐	기	신	규
공인명	서울특별시환경관리사업소 안양하수처리장장인	서울특별시환경관리사업소 남지하수처리장장인	서울특별시 안양하수처리장장인	서울특별시 남지하수처리장장인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고 시</p> <p>◎성북구고시제2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</p> <p>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-</p> <p>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 2. 사업주체: 일화하이츠(주) 김용석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, 규모 가. 위치: 성북구 정릉동 87-2, 56, 122 나. 대지면적: 1,385.7㎡ 다. 건축연면적: 2,022.6㎡ 라. 규 모: 연립주택 3층 1동 21세대 아. 사업시행기간: '89. 8-'90. 6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0. 1. 성북구청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</p>
--	---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변 경 사유	비고
건 설 위 치	정릉동 87-2의 2필지	변경 없음		
사 업 주 체	일화하이츠(주)	"		
시 공 자	태양종합건설(주)	"		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	비고
규모	층수, 동수	3층 1동	변경 없음	
	형 별	97.94 형 3세대	97.95 형 3세대	○세대별 면적조정
		96.06 6 "	96.04 5 "	
	세대수	85.03 3 "	85.32 3 "	
	주택종류	91.08 3 "	96.4 3 "	
108.43 3 "		105.61 3 "		
공급방법	95.32 3 "	96.84 3 "		
대지면적 (㎡)	1,385.7	변경 없음		
건축면적 (㎡)	502.65	505.65		
건축연면적 (㎡)	2,010.6	2,022.6		
건폐율 (%)	36.27	36.49		
용적율 (%)	108.82	109.47		
사업비 (천원)	1,084,385	변경 없음		
사업기간	89. 8	90. 6		
부대부리시설 (㎡)	비상저수조 1(19.5) 어린이놀이터 1(76.8)	변경 없음		
기 타				

●송파구고시제2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457호('89.10.14), 제196호('75.12.1), 제14호('89.8.24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송파구고시 제18호('89.10.19), 서고시 제196호('75.12.1), 제14호('89.8.24)로 지적 고시된 마천동 330의 7-327의 11호간의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(도로)을 실시코자 송파구 공고 제118호('89. 12. 28)로 공람 공고 완료하고, 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본 사업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0. 1.

송 파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 :

- 1) 마천동 330의 7-327의 11호간(신우교동)
- 2) 풍납동 83의 10-83의 47간
- 3) 송파2동 455-436번지간(한양근린공원 앞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
다. 사업의 규모 : B=6-15m, L=283m

라. 사업의 시행자 : 송파구청장
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로부터 2년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
사.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

●**송파구고시제3호**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48호('74. 3. 15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고시된 거여동 234번지 연결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(도로)을 실시코자 송파구 공고 제115호('89. 12. 21)로 공람 공고 완료하고, 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본 사업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0. 1.

송 파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거여동 234의 16-234의 45호간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
다. 사업의 규모: B=8m, L=30m

라. 사업의 시행자: 송파구청장
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로부터 2년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별첨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
●**송파구고시제4호**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107호('89. 3. 14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('89. 4. 13), 제196호('75. 12. 1)지

적고시된 천호대로 남단 도로확장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(도로)을 실시코자 송파구 공고 제117호('89. 12. 23)로 공람공고 완료하고, 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본 사업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0. 1.

송 파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

1) 풍납동 72의 1-71의 11호간

2) 풍납동 487의 4-487의 5호간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도로)

다. 사업의 규모: 1)B=30→50m, L=190m
2)B=4m, L=18m

라. 사업의 시행자: 송파구청장
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로부터 2년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별첨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
사업소고시

●**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5호**

하천의 점용허가

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990. 1.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

허가 년월일	위 치	지목	점용면적	점 용 목 록	점용기간	허가를 받은자	
						주 소	성 명
'90.1.23	강동구 일사동 614-3	학원	1,000㎡	수강스키장 배치선 전 조를 위한 일시 작업장	'90. 1. 23 - 4. 30	서울시 강동구 광장동 89번지	(주)실력수상회 대표 심 병철

사 령

◎1990년 1월 22일자 5. 6(5급직위 직무대리 요원)공무원 파견 병 제18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 성 수	통계담당관 파견 (‘90. 1. 22-’90. 4. 30)	성 북 구	지방행정사무관
유 형 태	관재과 파견 (‘90. 1. 22-’90. 6. 30)	중 탕 구	지방행정주사
이 종 순	성북구 파견 (‘90. 1. 22-’90. 6. 30)	양 정 피	행정주사
정 명 조	중탕구 파견 (‘90. 1. 22-’90. 6. 30)	공 무 원 교 육 원	

4. 5급 공무원 전보

병 제19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 병 회	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명함	중 구 보 건 소	지방의무기정
이 호 급	중구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	강 동 구 보 건 소	지방의무기좌
박 건	강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에 보함	아 동 병 원	지방약구기좌

4급 공무원 면직

병 제21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 희 수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강 서 구	지방서기관

◎1990년 1월 24일자

5급이하 공무원 징계

병 제22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윤 상 수	불 문 (경 고)	보 험 연 금 파	지방행정사무관
장 길 원	불 문 (경 고)	교 통 관 리 (서)	지방행정주사보
박 길 정	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, 3호에 의거 "정직1월"에 처함	남 부 군 토	
김 만 경	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, 3호에 의거 "정직1월" 처함.	청 소 년 회 관	지방행정직7급상당

◎1990년 1월 25일자 3급 공무원 파견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박종섭	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명함 ('90. 1. 25 - '91. 1. 24)	내무국	지방부이사관
권완	"	"	지방시설부기감
◎1990년 2월 1일자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23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재욱	지방별정직 7급상당(임상병 리사)에 임함	신규	
박정호	시립정신병원 근무를 명함. 지방별정직 7급상당(교양가스 관리기사)에 임함.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		
◎1990년 1월 25일자 6급이하 공무원 특별임용 령 제24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안태일	행정주사	양정과	지방행정주사
진중기	"	"	"
이우룡	"	"	"
문병록	"	"	"
조기득	행정주사보	"	지방행정주사보
박석중	행정서기	"	지방행정서기
허준	지방행정주사	농축과	지방행정주사
정창동	행정주사보	중구	지방행정주사보
천봉룡	"	"	"
김철근	행정주사	용산구	지방행정주사
이안구	행정주사보	"	지방행정주사보
김주환	"	"	"
강호	"	성동구	"
이재영	"	"	"
박문규	"	"	"
신용섭	지방행정주사보	"	행정주사보
이선기	"	"	"
주향구	행정주사	성북구	지방행정주사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심구철	행정주사보	"	지방행정주사보
이종규	"	"	"
김태일	"	"	"
김한비	"	"	"
이중하	지방행정주사보	성북구	행정주사보
김상화	"	"	"
문남훈	"	"	"
김은준	"	"	"
유인근	"	"	"
홍성기	행정주사보	도봉구	지방행정주사보
이윤수	지방행정서기	은평구	행정서기
김관호	행정서기	"	지방행정서기
김관호	행정주사보	마포구	지방행정주사보
황경성	"	"	"
신갑호	지방행정주사보	"	행정주사보
신중철	"	"	"
송택주	"	서초구	"
이현주	"	강남구	"
서울특별시			